2022년 9월 서울청 화장품 관련 동향보고

1.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

식약처 홈페이지>법령/자료>법령정보>입법/행정예고

-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공고 제 2022-403호, 2022-09-05)

식약처 홈페이지>법령/자료>법령정보>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>민원인안내서

- 화장품 등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(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) 가이드라인(2022-09-20)

2.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

※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(2022.09월)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- 셀룰라이트 분해에 도움을 주는 스크럽, 가려움증이 있는 피부에 도움을 주는 스크럽, 노화예방에 도움을 주는 스크럽
- (원료관련 표현) 여드름 등의 염증 개선에 효과, 진피층까지 수분을 공급, 콜라겐 합성을 촉진
- 발모제급 탈모샴푸인데, 한달만에 정수리가 채워지더라구, 비었던 곳들이 채워져, 한달만 써도 티가 확나
- 샴푸로 머리가 난다고?, 모발성장9%, 검증된 발모효능 기능성, 샴푸・헤어토닉, 발모효과 임상완료, 발모촉진 효능 입증, 항산화&항염 효과 입증, FGF7 세포활성/모발 재생을 촉진, FGF10세포활성/모발 성장을 촉진, 모발 밀도증가 확인, 모발 두께증가 확인, 성장기 모발 증가 및 휴지기 모발 감소 확인, 항염 효력시험, 항산화 효력시험, 모발성장 유효성분 55% 함유, 발모제품, 항산화효능・항염효과 입증, 독일서 탈모감소&모발재생효능 입증, 샴푸・헤어토닉, 탈모예방・발모효능 입증, 모발성장 9%, 항산화 및 항염효과 입증
- 무좀원인균 백선균 99.9% 제거

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을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- 바르고 닦으면 즉각 **톤업 효과**!(**사용전, 후 사진으로 미백효과를 나타냄**), 내 피부처럼 **자연스럽게 즉각 톤업**,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! **미백**·보습 효과, 바르고 닦아내면 끝! 간편한 사용법, 물티슈로 간편하게, 흐르는 물에 가볍게, 물로 씻어내거나 티슈로 닦아내는 타입으로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**식약처 보고 완료! 미백 기능성 제품"**, "STEP 02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거나 물로 가볍게 헹궈내 줍니다."

※ 위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(미백) 심사제외 품목보고를 한 제품으로, 보고한 용법용량은 '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바른다'이며 **닦아내거나 씻어내는 용법으로 미백에 대한 기능성 심사받은 바 없음**

※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·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(대법원 2003.2.28. 선고 2002두6170판결)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